

의안
번호

38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기 획 위 원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1. 22.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나. 의안번호 : 제381호
- 다. 제출일자 : 2024. 11. 7.
- 라. 회부일자 : 2024. 11. 15.

2. 제안이유

- 상위법(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위원회 준치근거가 삭제(‘20년)되었으며 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절차 의무화에 따른 정보화전략위원회의 개최실적 저조로 실질적인 기능 상실이 지속됨에 따라 위원회를 폐지하고, 홈페이지 정보관리를 현행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내용을 구체화(안 제5조)
- 나. 정보화전략위원회에 관련 조항을 삭제(안 제6조~제12조)
- 다. 대표 홈페이지 정보관리 시 담당 직원명을 제외하고 담당부서명만 명시하도록 조문 정비(안 제35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 09. 19. ~ 2024. 10. 10.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운영실적이 저조한 정보화전략위원회를 폐지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담당직원의 성명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안 제5조제3항은 지능정보화책임관 업무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기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로 변경함.

〈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한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 법 제8조제1항에서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지원 및 평가 2.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3.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조정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관리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한다)의 도입·활용 7.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 윤리의 확립 8.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 안 제6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정보화전략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괄 삭제하는 것으로, ‘정보화전략위원회’는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상위법의 전부개정으로 위원회 준치근거가 삭제되고 해당 위원회 심의 사항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의무 설치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함으로 설치 목적을 상실한 ‘정보화전략위원회’를 폐지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됨.
- 안 제35조는 구 대표 홈페이지에 ‘정보 담당부서 및 담당직원’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담당부서’만 명시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담당 직원의 성명 정보가 악성민원으로 악용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 됨.

□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행정 여건의 변화로 실효성이 저조한 위원회를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 됨.
- 다만, 제2조제4호 “전자심의” 정의 규정은, 삭제되는 제10조 및 제12조에 사용된 “전자심의” 용어에 대한 해석과 정의를 위해 규정된 것으로 해당 조항(제10조 및 제12조)이 삭제됨에 따라 제2조제4호 또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수정안〉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전자심의"란 회의 개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된 자료로서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	--------------